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면허·자격 증명 발급 대상자를 정비하고, 증명서 종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하여 그간 관행적으로 발급되어온 영문 유효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등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에 대한 신청 및 발급 방법을 정하는 등 면허·자격 증명 발급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허·자격 증명 발급 대상자의 근거 법률 및 대상자 현행화(안 제2조)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증명 발급 대상자의 근거 법률 및 대상자를 현행화하고자 함

나. 별지 서식으로 발급되는 면허·자격 증명의 종류 및 내용 신설(안 제3조)

기존 발급서식의 종류와 내용을 현행화하고,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 발급되었던 영문 유효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와 행정처분 이력(예정)이 있으나 현재 면허·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발급되는 현재 전문직 상태 증명서(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에 대한 발급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도록 함

다. 면허·자격 증명의 신청의 변경 및 외부서식의 신청 방법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영문 유효 증명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현재 전문직 상태 증명서를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고,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서식(외부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외부서식 증명 발급의 검토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

외부서식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증명의 용도, 기재사항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마. 별지 영문 증명서 서식 신설 등 미비점 보완

증명서 신청서 및 과거 행정처분 유무에 따른 영문 증명서 등 별지 서식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재검토 기한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26. 3. 25. ~ 4. 6.(10일간)

3) 규제심사 : 비대상

보건복지부예규 제 호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다.

2026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예규(안)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에 규정한 면허·자격증을 가진 자가 그 면허·자격등록 사항에 관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른 국문 및 영문의”를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면허·자격 증명”을 “따른 면허·자격 증명(이하 “면허·자격 증명”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료인·전문의·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전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간호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면허·자격 증명의 종류) 면허·자격 증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문 면허·자격 증명서 : 면허·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한글 증명서
2.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문 면허·자격 증명서(CERTIFICATE) : 면허·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
3. 별지 제4호 서식의 영문 전문의 면허·자격 증명서(CERTIFICATE) : 전문의 면허·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
4.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 무징계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없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
5.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 현재 전문직 상태 증명서(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면허·자격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자격 증명신청서(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등록대장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

를 정정·보완하게 하거나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면허·자격 증명을 신청한 신청인이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예정된 행정처분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5호에 따른 면허·자격 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인이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서식(이하 “외부서식”이라 한다)으로 면허·자격 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자격 증명신청서에 해당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거쳐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외부서식에 의한 면허·자격 증명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자격 증명의 용도
2. 외부서식의 기재사항과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동일한지 여부
3. 등록대장 등을 통하여 외부서식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자격 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중전의 제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6조 중 “2020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자격 증명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에 면허·자격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2조에 규정한 면허·자격증을 가진 자 가 그 면허·자격등록 사항에 관 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7 조 등에 따른 국문 및 영문의 면허·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자격의 등 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 문의 ----- ----- -----.
제2조(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 이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 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 한다.	제2조(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 ----- 다른 면허·자격 증명 (이하 “면허·자격 증명”이라 한 다)----- -----.
1. 「의료법」에 따라 면허 또 는 자격을 받은 의료인·전문 의·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1. ----- ----- 의사·치 과의사·한의사·조산사·전문의
<신 설>	2. 「간호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간호사·전문간호 사·간호조무사
2. ~ 9. (생 략)	3. ~ 10. (현행 제2호부터 제9호 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3조(면허·자격 증명의 종류) 면허·자격 증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문 면허·자격 증명서 : 면허·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한글 증명서</u> <u>2.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문 면허·자격 증명서(CERTIFICATE) : 면허·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u> <u>3. 별지 제4호 서식의 영문 전문의 면허·자격 증명서(CERTIFICATE) : 전문의 면허·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u>

현행	개정안
	4. <u>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 무징계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없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u> 5. <u>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 현재 전문직 상태 증명서(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u>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조(증명의 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면허·자격 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면허·자격 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신설> <u>제5조(신청서의 보완)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등록대장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u>	<u>제4조(면허·자격 증명의 신청 및 보완 등)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면허·자격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자격 증명신청서(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등록대장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정정·보완하게 하거나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면허·자격 증명을 신청한 신청인이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예정된 행정처분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5호에 따른 면허·자격 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신청인이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서식(이하 “외부서식”이라 한다)으로 면허·자격 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자격 증명신청서에 해당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증명서의 발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증명서의 발급)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거쳐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외부서식에 의한 면허·자격 증명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자격 증명의 용도 2. 외부서식의 기재사항과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동일한지 여부 3. 등록대장 등을 통하여 외부서식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자격 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명서 발급전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u>2020년 1월 1일</u>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u>제1항부터</u> <u>제3항까지</u>----- ----- ----- ----- 제6조(재검토기한) ----- ----- ----- ----- <u>2026년 1월 1일</u>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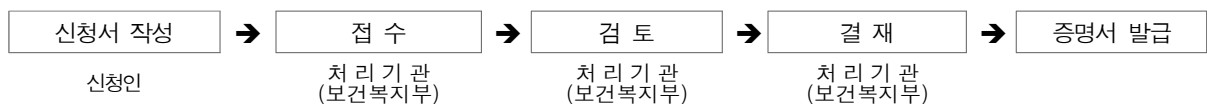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3. 수수료(정부수입인지)는 발급 부수별 각 500원
 -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구입(전자수입인지 가능, 행정수수료용)
 - * 해외우편 발송 신청시 통상환증서 동봉(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작성시 주의사항>

1. 영문 성명은 여권 등 타 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국문 증명서만 발급받기를 원할 때에는 국문 성명만 기재)
2. 우편수령을 희망하시는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1층 안내데스크)**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은 발송일로부터 3~4일 이내 수령이 가능하고, 수령인 부재시 우편물이 반송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기관 발송시 우편주소는 “해외기관 주소 기재”**
4. 용도란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서식으로 면허·자격 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 80g/m²]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Name of Profession :
License Number :
Date of License Issued :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license is currently in good standing and that no disciplinary measure such as revocation or suspension according to the license laws concerned has been taken in the past or planned for the same license.

Signature : _____

Title :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Board Seal Address : 13, Doum 4-Ro, Sejong, 30113
Republic of Korea

Date :

◆ This Certificate was issu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Any forgery or falsification of the Certificate can be checked on the "Authenticity Check for Issued Documents" menu of the MOHW website (lic.mohw.go.kr), which is available for 90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or by the barcode at the bottom of the Certificate.
Remark: The seal of the issuer on the Certificate is the official government stamp (which includes the electronic image of the official stamp).

210mm×297mm[백상지 80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Name of Profession :
License Number :
Date of License Issued :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license is currently in good standing, although there is a record of past or planned disciplinary action as follows:

Disciplinary History:

- Date of Administrative Action:
- Type of Action:
- Status: Completed

(Note: No other disciplinary actions are in record as of the date of this Certificate.)

Signature : _____
Title :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Board Seal Address : 13, Doum 4-Ro, Sejong, 30113
Republic of Korea
Date :

◆ This Certificate was issu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Any forgery or falsification of the Certificate can be checked on the "Authenticity Check for Issued Documents" menu of the MOHW website (lic.mohw.go.kr), which is available for 90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or by the barcode at the bottom of the Certificate.

Remark: The seal of the issuer on the Certificate is the official government stamp (which includes the electronic image of the official stamp).

210mm×297mm[백상지 80g/㎡]